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동업자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 의족, 의수 등 제작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같은 날 동업자금으로 금 ○○○만원, 같은 달 ○. 금 ○○○만원, 20○○.
 ○. ○. 금 ○○○만원 합계 금 ○○○만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고, 수익금의 40%를 지급 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 ○. ○.부터 20○○. ○.

중순경까지 위 제작업체를 피고와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 2. 그런데 피고는 20〇〇. ○.경부터 원고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위 제작업체를 등 영하면서 경영자금 및 수익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원고와 피고는 잦은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20〇〇. ○○. ○○.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고 위 제작업체의 경영에서 물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출자한 동업자금 ○○○원과 20○○. ○.부터 20○○. ○.까지의 수익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 ○○○원 합계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1. 갑 제2호증 지불증

1. 갑 제3호증 수익금지불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 ○ . ○ . 의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관 할 법 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 소멸시효일람표, **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동업자 중 1인이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음(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